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4. 30 선고 2020가단530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
말소]

전 문

원 고 A 단체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1. 4. 2

판결 선고 2021. 4. 30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9. 8.10. 접수 제222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2016. 12. 23. 창원 지방법원진주지원사천시 법원 2016차 527호로 지급명령 신청을하여 '위 C은 원고에게 17, 131, 850원 및 그중 7, 148, 245원에 대하여 2016. 12. 15. 부터 이 사건지급 명령송달일까지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 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2017 . 1. 13. 확정된 사실, 피고는 소외 C소유의 별 지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부동산' 이라 한다)에 관하여1999. 8. 10. 자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창원 지방법원사천 등 기소제 2225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C에게 가지는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매매예약이 성립한 1999 . 8. 10. 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소외 C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 C을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는위 C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 전 청구권가 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있다고판단된다(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에게 20, 000, 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위 돈을 현재까지 조금씩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나,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).

2.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전선주

별지